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32
----------	-----

2023년 4월 2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1월 25일, 박강산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4월 2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강산 의원)

가. 제안이유

-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써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짐. 이를 매개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발맞춰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자본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를 통한 제도 정립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으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의 특색에 맞춘 줍깅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좁깅의 정의(안 제2조제1호).
- 좁깅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좁깅활성화사업 추진 규정(안 제5조).
- 좁깅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 좁깅의 날 및 주간 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조례제정 배경 및 목적

-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줍깅’)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환경보호 운동으로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국내에는 2018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운동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pick up)’과 조깅(jogging)을 합쳐 ‘플로깅’이라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줍기와 조깅을 합쳐 ‘줍깅’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이외에도 산 청소를 병행하는 등산인 ‘클린 산행’, 해변을 청소하는 ‘클린 비치’, 심지어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수중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음¹⁾.
-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실내 운동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등산, 걷기 등의 야외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인기를 끌고 있는 ‘줍깅’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널리 확산하고 있음²⁾³⁾⁴⁾.
- 최근에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플로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제목에는 ‘플로깅’,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한편 2019년 국립국어원은 ‘플로깅’ 또는 ‘줍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할 바 있음.

1) 조깅? 대세는 ‘플로깅’ ‘줍깅’이다(경향신문, 2021년 6월 12일).

2) 담배꽂초 한 가득... 우리가 줍깅을 하는 이유(오마이뉴스, 2022년 7월 11일).

3) 제천교육지원청, ‘쓰담쓰담’ 봉사활동 추진(국제뉴스, 2023년 2월 7일).

4) 함께하는 ESG 프로그램 ‘줍깅 챌린지’ 개최(HL 디앤아이한라 웹진, 2022년 11월 21일)

<타 시·도 플로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 명	공포일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21.11.2.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1.12.29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2.16.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2.10.12.

- 본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줍깅 활성화 계획수립, 줍깅 활성화 사업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줍깅의 날 제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안 제명 및 구성>

항 목	내 용
제명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구성	총 12조로 구성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제8조(줍깅활성화 계획, 사업, 활동 인증, 인센티브 제공 및 줍깅의 날 등)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포상 등), 제12조(시행규칙)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줍깅활성화 계획과 사업, 활동인증, 인센티브 제공 및 줍깅의 날(제4조~제8조), 업무 위탁(제9조) 및 포상(제11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서울시는 ‘줍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의 규정을 통해 현재에도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쓰레기줄이기, 재활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줍깅 지원 및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 현황>

조례명	조	내용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제10조의2 (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금 등의 지급)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시민참여)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의 친환경 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세부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목은 「서울특별시 줌깅 활성화 조례안」이며, '줌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합성어이므로, 이보다는 국립국어원의 '쓰담달리기' 또는 '쓰담걷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안 제3조는 시장이 시의 환경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줌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줌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와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의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와 제5조 및 제8조는 줌깅활성화 계획수립, 줌깅활성화 사업 추진 및 줌깅의 날을 규정한 것임. 줌깅이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이므로, 공적 영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나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줌깅 활동은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이며,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즉, 줌깅 활동을 통한 궁극의 목표는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라 할 수 있는바, 수단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 상 비효율적이며,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안 제6조와 제7조는 줌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운영하여 활동을 인증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의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줍깅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발적인 시민운동에 대해 별도의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울시는 2022년에 시민자율청소조직 활성화 계획(생활환경과-2954, '22.3.2.)을 수립하여 운영한 바 있고, 올해에는 서울클린데이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계획(생활환경과-2279, '23.2.13.)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이 두 계획 모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와 제10조(시민참여)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줍깅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 조례의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조례안에는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나, 조례 내용에는 “줍깅앱” 제작, 줍깅도구 지원 및 자율청소함 설치, 인센티브 제공, 업무 위탁 등 비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⁵⁾.

5) 사업내용이 유사한 서울시 중구의 ‘건강마일리지’ 사업에 따르면 앱 제작에 1억 원이 소요되었고, 운영비와 인센티브 등에 2억 3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22년, ’23년 동일)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줍깅 활동은 대표적인 환경 시민운동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줍깅앱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2
----------	-----------

제안년월일: 2023년 4월 27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줍깅 활동은 대표적인 환경 시민운동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줍깅앱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정의에 “줍깅앱”을 삭제함(안 제2조).
- 줍깅 활동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 제7조).
- ‘줍깅의 날’ 지정 대신 ‘줍깅 주간’을 신설함(안 제8조).
- 줍깅활성화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 일부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줍깅”을 “줍깅”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줍깅을 할”을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줍깅활성화계획에는”을 “시장은”으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원마련”을 “재원 마련”으로 한다.

안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안 제8조)의 제목 “(줍깅의 날)”을 “(줍깅 주간 및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요일을 줍깅의 날로 하고, 줍깅의 날”을 “토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줍깅의 날과”를 “따른”으로, “줍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행사”로 한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제7조(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줍깅 활동을 인증받은 경우
-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줍깅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1. 목표걸음 수 또는 목표 쓰레기 수거량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제8조(줍깅의 날)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줍깅의 날로 하고, 줍깅의 날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의 날과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줍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줍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12조 (생략)

<삭 제>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

----- 토요일 -----

-----.

② ----- 따른 -----

----- 행사 -----

-----.

<삭 제>

제7조~제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환경정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